

## 관련법규 제·개정 현황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1998-244호 '98. 12. 29)

#### 1.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전강보조식품판매업을 신고대상에서 삭제하여 자유업으로 하고, 식품의 안정성·풍속유지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제조업과 유홍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1.2 주요골자

- 가. 전강보조식품 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함(안 제7조 제5호).
- 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및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 음식점영업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3조).
- 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의 영양사 의무고용 제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하고는 조리사 의무고

- 용제를 폐지함(안 제18조, 제19조).
- 라.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고용, 자격, 직무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마. 전국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는 동업자 조합을 시·도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29조).
- 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
- 사.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시·도에 40%, 시·군·구에 60%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부정·불량·퇴폐·변태영업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 2, 제42조 제1항).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공고 제1998-245호)

#### 2.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청소년

을 유홍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불법, 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2 주요골자

- 가.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와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서류에서 제외시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1조)
- 나. 소분·판매가 금지된 당류·다류·빙초산·구연산 등의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소분·판매를 허용함.(안 제21조)
- 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허가 또는 신고시 자가품질검사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검사의뢰계약서를 첨부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함.(안 제22조, 제27조)
- 라.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를 첨부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안 제25조·제26조)
- 마. 영업신고처리기간을 폐지하여 영업신고서를 즉시 수리도록 하되, 신고 수리 후 1월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27조 제5항)
- 바. 식품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 위주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의 발생 등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 2 제1항·제2항)
- 사.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38조·제39조)
- 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과자류, 면류, 김치류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하여는 자가품질검사의 무를 면제하고, 검사방법도 식품품목별로 하던 것을 식품유형별로 하도록 하는 등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19조 별표

8)

- 자. 두부의 제조·가공과정중 원료를 같아 부수는 과정에서 성형틀에 투입되는 과정까지를 자동화시설로 설비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함.(안 제20조 별표 9 제1호)
- 차. 즉석판매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으로 옛류, 두부류, 다류(인스탄트커피는 제외) 등을 추가함.(안 제24조의 2 별표 11)
- 카.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에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 별표 13)
- 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홍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차에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함.(안 제53조 별표 15)
- 파. 청소년유해업소(단란주점·유홍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출입 또는 이용하게 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3조 별표 15)

## 3.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표시기준 중 영업허가번호, 함량표시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입안에 고하였다.

### 3.1 주요내용

- 가. 식품의 표시사항중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조 제3호)
- 나. 2000년에 대비하여 제조일 및 유통기한 표시를 “○○○. ○○. ○○” 또는 “○○○○년 ○

○월 ○○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관련)

다. 일반적 성분배합기준이 식품공전에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 및 성분의 함량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그 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함.(제7조 관련)

-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전강보조 식품 및 특수영양 식품류는 현행대로 유지
-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하여 혼합식품류(혼합식용유, 혼합장 등)는 현행대로 유지

라. 성분 또는 원재료의 함량표시를 백분율 또는 중량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백분율로만 표시하도록 함.(제7조 관련)

※ 동 개정내용은 규제개혁과 관련 1차적으로 우선 개정하는 내용이며 '99년 3월부터 전반적인 표시사항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

#### 4. 식품첨가물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한시기준 · 규격 인정기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19호 '99. 3. 17)

- 식품첨가물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한시기준 · 규격 인정기준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준 · 규격 설정에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준 · 규격 설정인정대상 제품의 범위)** 한시기준 · 규격의 설정 대상제품의 범위는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은 제외한다) 및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으로 한다.

**제3조(인정신청서 제출시의 유의사항)** ① 식품첨

가물(천연첨가물에 한한다. 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이나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한시기준 ·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시기준 · 규격(변경) 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3부(식품의약품안전청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원재료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로 가름한다.

③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자료는 합리성, 과학성 및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으로서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외국의 자료를 첨부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품일 경우에는 수출국명, 제조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시기준 · 규격 원본(또는 사본)과 변경내용에 관한 전 · 후 대비표 및 변경내용에 관한 전 · 후 대비표 변경사유를 작성 ·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상호, 의뢰자 및 제조자명의 변경 등 기준, 규격관련사항이 아닌 것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단, 제품명은 변경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4조(한시기준 · 규격인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한시기준 · 규격설정 인정 신청이 있거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시기준 · 규격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준 ·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한시기준 · 규격 인정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작성)** ①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식품첨가물공전 또는 식품공전을 준용한다.  
 ②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1. 제품명

- 1) 가급적 원료물질과 관련되는 제품의 특성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2)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 2.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

- 1)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 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 3. 제조방법

- 1) 과학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 2)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원료 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4. 기준 및 규격

#### 가. 식품첨가물

##### 1) 함량

- ① 유효성분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안에 분자식 및 분자량을 기재한다. 또한, 유효성분이 2종이상일 때는 가능한 한 각각에 대하여 설정한다. 다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순물질로 직접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위, 역가, 색가 또는 그 양에 대응하는 분해물질(예:총질소, 조단백질 또는 OOH화합물)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② 유효성분의 함량, 단위, 역가 또는 색가 등의 기준은 공인된 근거자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시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확인시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 효소류 : 90~130%  
 — 천연색소류 : 100% 이상(제제일 때에는 90%이상)  
 — 기타 : 100%이상(제제일 때에는 90~130%)

### 2) 성상

제품의 성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색상, 냄새, 형상등을 기재한다.

### 3) 확인시험

주로 화학적 시험으로서 확인하려는 성분이 2종 이상일 때에는 중요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자외부, 가시부 및 적외부 흡수 스펙트럼측정법, 크로마토그라프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4) 순도시험

제품의 원료 및 제조과정 등에서 혼입, 생성이 예상되는 불순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예:비소, 중금속, 납, 잔류용매 등)

- 5) 제품의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조감량, 수분, 강열잔류물, 회분,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균 등을 설정한다.

#### 나. 기구 및 용기 · 포장

##### 1) 정의

제품의 재질별 규격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재질의 정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재질이 합성수지제인 경우 ( )안에 단량체의 분자식, 화학명 및 분자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재질규격

제품의 원료 및 제조과정 등에 남아있는 미반응 잔류 원료물질 또는 혼입, 생성이 예상되는 불순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예:납, 카드뮴, 휘발성물질 등)

##### 3) 용출규격

식품공전에 준한 침출용매를 사용시 제품에서 이행되는 사항을 기재한다.(예: 중금속, 미반응 잔류 원료물질 등)

##### 4) 재질확인시험

주로 물리·화학적 시험으로서 확인하려는 성분이 2종이상일 때에는 중요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자외부, 가시부 및 적외부 흡수스펙트럼 측정법, 열분석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5. 용도, 용법, 사용량

- 1) 식품첨가물로서의 사용목적, 대상식품 등을 기재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방법, 사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
- 2)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서의 사용용도 등을 기재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방법 등을 추가 할 수 있다).

#### 6. 포장단위(식품첨가물에 한한다)

- 1) 유통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재한다.
- 2) 수입품은 수입 및 유통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재한다.

#### 7. 보존기준(식품첨가물에 한한다)

품질관리와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방법, 보존온도(온도, 습도, 광선, 포장 등)를 기재한다.

#### 8. 시험방법

- 1) 시험방법은 성분규격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2) 식품첨가물공전이나 식품공전에 준하여 시험이 가능할 경우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이 품목 x g을 취하여…(전처리 조작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식품첨가물공전 제3.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3) 공전에 수재되지 않은 시약, 시액, 기구, 기기 및 상용표준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구는 크기, 폭 등의 형태를 도시하고 그 사용방법과 상용표준품의 규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첨부자료)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

기·포장의 한시기준·규격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2.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 희석한 제제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한시기준·규격인정서 사본(식품첨가물에 한한다)
3.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용도(식품첨가물인 경우 사용량 및 보존기준을 포함한다)
4. 재질,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 구성 물질이 식품첨가물공전 또는 식품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의 성분 규격 및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미국의 CFR, 유럽연합의 Directives, FCC 수재품, Codex 승인 품목, JECFA(FAO/WHO)의 식품첨가물 규격집 수재품, 일본의 화학적합성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list 수재품 및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유재된 물질은 생략할 수 있다.
  - 1) 명칭 : 일반명칭 또는 화학명칭
  - 2) 화학구조 : 화학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학식 또는 화학적 조성 등과 같은 화학적 본질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조방법 :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원료처리 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4) 이화학적 성질 및 순도 :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및 그 시험법, 함량 및 정량법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은 성상, 확인 시험 및 그 시험법과 함량에 한한다)
  - 5) 사용목적 또는 용도, 사용량 및 사용방법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는 사용량을 제외할 수 있다)
  - 6) 효과(식품첨가물에 한한다)
  - 7) 독성시험(급성, 아급성, 만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 8) 외국의 사용예

제7조(신청서의 보완, 시정 및 반려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시정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1. 보완

- 1) 원재료 또는 성분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맞지 아니할 때
- 2) 제조방법이 비위생적이거나 불합리 한 때
- 3)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중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
- 4) 한시기준·규격 변경시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원본(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합리한 때
- 5) 용도, 목적 등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때(식품첨가물에 한한다)
- 6) 성분 및 배합비율의 내용과 제품의 특성 또는 제품명이 상이한 때
- 7) 기타 해당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특성, 안정성 등의 자료가 불충분한 때로서 보완하여 시정이 가능한 때
- 8)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전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 보완기간은 30일로 하고 보완회수는 1회에 한한다. 단, 동 기간까지 보완되지 아니할 때의 독촉기간은 7일로 한다.

##### 2. 시정

- 1) 용어, 기호 또는 일반적인 기재 내용이 식품첨가물공전 또는 식품공전에 준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내용상 단순한 탈자나 오자 등이 있을 때
- 3) 성분 명칭이 식품첨가물공전 또는 식품공전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상이하게 기재되었을 때
- 4) 성성이 의뢰검체와 상이할 때
- 5)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규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때
- 6) 위 각 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검

토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 3. 반려

-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한시기준·규격 검토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본 기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2) 안정성 및 건전성 등이 미확인 또는 결여되는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때
- 3) 식품첨가물공전상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특정의 첨가물과 유사하여 그 품질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식품첨가물에 한한다)
- 4) 보완 또는 독촉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보완치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때

제8조(보침) ①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첨부자료 이외에도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품에 사용된 원료성분,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기구, 균주배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근거로 첨부한 국내외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성적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한 검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때(제6조 제1호)
2. 보완 또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성분규격 분석이 필요한 때

####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4호 '99.1.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2. 재질별규격 1. 합성수지재중 “1-32에 폭시수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2. 에폭시(Epoxy)수지

##### 1) 정의

에폭시수지라 함은 비스페놀 A와 에피크로로히드린 등이 주성분인 중합체를 말한다.

##### 2) 재질규격(mg/kg)

(1) 납 및 카드뮴: 각각 100 이하

(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 부틸페놀 포함): 500이하

(3) 아민류 : 1.0 이하

##### 3) 용출규격(mg/l)

(1) 중금속 : 1.0 이하(납으로서)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증발잔류물 : 30 이하

(4)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 부틸페놀 포함) : 2.5 이하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청량음료 공병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영업자 준수 사항 개정·고시

보건복지부는 청량음료 공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99. 1. 13일 개정·고시하였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청량음료에 사용하는 공병의 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에 공병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물을 소비한 후 공병을 판매업자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불받는 제도로 청량음료제조영업자가 청량음료의 공병을 원활히 회수하게 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94년 시행이후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내용중에는 “판매영업자는

공병보증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판매영업자가 보증금의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환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관행을 금지시켰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1차는 시정명령, 2차, 3차는 영업정지 5일, 10일에 처한다.

공병보증금의 공병별 보증금은 190ml~300ml미만: 40원, 300ml~640ml미만: 50원, 640ml~1,000ml미만: 60원, 1,000ml~1,500ml미만: 80원, 1,500ml이상: 100원 등이고 판매업자가 받은 회수 수수료는 190ml~1,000ml미만: 5원, 1,000ml~1,500ml미만: 7월, 1,500ml이상: 10원으로 개정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과 같다.

또한 공병보증금 환불에 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도록 폐지하고, TV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니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이에 대한 홍보실적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도 폐지되었다.

## 7.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훈령 제40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하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 한다)은”으로 하고, “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서류 접수시 이행사항)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뜻이, 32) 식품 원재료 분류상의 식품원재료와 3. 원료등의 구비요건 1). (6) ②의 식품의 부원료

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기타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시행 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소분·판매금지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마다 수입 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수입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 및 바탕 색상이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지 않은 셋트의 경우에는 판매단위인 셋트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1]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찻잔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기구류

제7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 중 “수입신고서 접수당일(늦어도 익일)에 서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5일이내에”를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로 하며, 동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 제3호 (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속검사 대상 이외의 농산물

- 1)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우선순위 등급 중 해당 지방청 등급없이 1 및 2순위 이외의 농약이라 하더라도 다성분시험법에 의해 동시다성분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분석한다.

나. 신속검사 대상인 농산물

- 1) 검출이력이 있는 농산물 중 단성분시험법 대상 농약인 경우에는 해당 농약과 함께 해당 지방청의 우선순위 등급 중 1 및 2 순위에 속하는 동시다성분 분석이 가능한 농약과 1 및 2 순위와 동일계 3, 4 및 5 순위에 속하는 동시다성분 분석이 가능한 농약 모두 검사

제7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6호 중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하며, 동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시행규칙을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선식품류 이외의 농·임산물과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등의 수산물이 조금 부패되거나, 변질 또는 폐사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이를 선별토록하여 선별된 물량에 한하여 재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2]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판매, 일시적 교환 또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양곡관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준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범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식용 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 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 발행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판매, 일시적 교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당해 원료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판매, 일시적 교환 또는 임대하는 자 및 구입, 교환 또는 임차하는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 ②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6-2]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와 재계약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위탁계약하여 자신이 수입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식용 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 발행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소간 위탁계약한 서류 사본과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와 재계약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당해 원료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와 재계약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자 및 당해 원료를 구입하는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목적 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 ②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목적 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을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부칙(제40호, '98. 12. 31)

- ①(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검사가 진행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훈령에 의한다.

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하는 等의 내용으로 食品管理法施行令을 改正하였다.

## 8. 1999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20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였다. 고시 내용중 식음료제조업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참치통조림:동원산업, 오뚜기, 사조산업
- 콩기름:제일제당, 신동방, 삼양식품
- 조제분유: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분유
- 아이스크림: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삼강
- 빙과: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 정제당: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 껌: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 라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 인스턴트면류:농심
- 발효조미료:대상, 제일제당
- 혼합조미료:제일제당, 대상
- 커피:동서식품, 한국네슬레
- 커피믹스:동서식품, 한국네슬레
- 사이다: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보틀링
- 콜라:한국코카콜라보틀링, 롯데칠성음료, 범양식품
- 알카리성이온음료:동아오츠카, 제일제당
- 오렌지쥬스: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롯데삼강

## 9.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966호)

環境部는 政府規制整備計劃에 따라 淨水器製造業品質管理人의 資格基準을 緩和하고, 샘물 開發許可詩에 取水量 制限등의 條件을 附與할 수 있는 環境

### 〈개정내용〉

- 제7조 제2호 나목 중 “대학”을 “전문대학 또는 대학”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하며, 동호 라목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 제19조 제1항 제2호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법 제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제한 등 허가조건의 부여

## 10.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 제1999-34호 '99. 4. 27)

#### 10.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이 개정('99.1. 21. 법률 제5664호)됨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삼경작지정제, 수출입신고제 등 인삼의 생산, 가공,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10.2 주요내용

##### 가.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 1) 인삼산업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계획에 의거 동 위원회를 폐지함.
- 2) 종전에는 경작지정을 받은 자가 경작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경작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함.
- 3) 종전에는 미삼류, 잡삼류, 기타삼류등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인삼류에 대하여도 검사

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를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통규제를 해소함.

- 4)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업체는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아 자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검사업체 시설·인력 등 의 기준을 새로 정함.

#### 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1) 인삼경작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경작지정 절차, 경작지정해제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재전년도 9월 30일까지 인삼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2) 5년근이상의 제조원료용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에게 신고하고 수확입회확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금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확예정일 3일전까지 인삼협동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연근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확인방법 등 연금확인검사 담당직원의 자격 등을 정함.
- 3) 인삼제조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제조업 등록절차 등 인삼제조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인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

록 하여 제조업 신고절차를 간소화 함.

- 4) 종전에는 인삼류 표준제조방법을 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인삼류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 지켜야할 일반수칙, 제조규칙을 제조기준으로 정함.
- 5)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희망일 30일전까지 국립 농산물검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6) 인삼류의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삼류 검사기준에 중금속, 조사포닌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검사에 대한 투명성제고를 도모함.
- 7) 인삼류검사기관 검사품의 품질저하방지를 위해 검사에 합격하여 유통 중인 검사품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이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하고 기준미달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8) 종전에는 검사수수료를 농림부장관이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림부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각 인삼류 검사기관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9) 수출입 신고의 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